

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5. 10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금에 대한 단기간의 이자보조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미흡하여 이자보조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함.

2. 주요 내용

- 조례 제5조중 보조기간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농업·농촌기본법 제7조 및 제17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”를 “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보조기간은 3년”을 “보조기간은 5년”으로 한다.

제9조중 “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”를 “「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명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 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	제명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 금지급 조례	법령제명 띄어쓰기
제5조(보조기간)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<u>보조기간</u> 은 3년 이내로 한다	제5조(보조기간) ----- ----- <u>보조기간</u> 은 5년 -----	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해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이자 보조기간을 연장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.